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196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김재섭ㆍ이종배ㆍ이종욱

박정하 • 주호영 • 김상욱

고동진 • 박충권 • 박준태

조은희 • 천하람 • 진종오

박수민 • 조지연 • 이소영

한지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'쉴 겨를'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'일을 쉰다'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 가 폄하되고 있음.

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,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, 육아 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

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(안 제18조 및 제19조 등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급여등"을 "필수전후육아급여등"으로 하며, 같은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"출산전후휴가급여등"을 각각 "필수전후육아급여등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전단 중 "출산휴가"를 각각 "필수육아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출산전후휴가급여등"을 "필수전후육아급여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"출산휴가"를 각각 "필수육아"로 한다.

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 제목 "(육아휴직)"을 "(집중육아)"로 하고,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"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"을 "집중육아(이하 "집중육아"라 한다)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육아휴직을"

을 "집중육아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를"로,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를"로,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를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·제5항 및 제6항 중 "육아휴직을 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19조의2제2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를"로,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19조의4의 제목 중 "육아휴직과"를 "집중육아와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"육아휴직을"을 각각 "집중육아를"로 한다.

제19조의6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"을 "필수전후육아, 집중육아"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육아휴직이나"를 "집중육아나"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하고, 같은 항 제 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"육아휴직을"을 각각 "집중육아를"로,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39조제3항제4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2호 중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한다.

②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출산휴가"를 각각 "필수육아"로, "육아 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9조제1항제10호 중 "산전·산후 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, "육 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1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⑤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제7호의2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호·제2호, 같은 조 제3항·제4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29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항 제1호·제2호, 같은 조 제5항·제6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91조의24제2호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(7)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마목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⑧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7항제4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5장제1절의 제목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70조의 제목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육아휴직을"을 각각 "집중육아를"로, "출산전후휴가기간과"를 "필수전후육아기간과"로,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"로,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"로, "육아휴직이"를 "집중육아가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·제3항·제4항 및 제5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71조의 제목 중 "육아휴직의"를 "집중육아의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73조의 제목 · 제1항 및 제2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

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육아휴직을"을 "집중육아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·단서 및 제5항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73조의2제1항 중 "출산전후휴가기간과"를 "필수전후육아기간과"로 한다.

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"육아휴직"은"을 ""집중육아"는"으로, 한다.

제5장제2절의 제목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5조의 제목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,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5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6조의2제1항 중 "출산전후휴가기간"을 "필수전후육아기간"으로,

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7조제1항 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, ""육아휴직"은"을 "'집중육아"는"으로, "출산휴가"를 "필수육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, "'육아휴직''은"을 "'집중육아''는"으로, "육아휴직''을 "집중육아''로 한다.

제77조의4제1항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 제77조의5제3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77조의9제1항 단서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 제77조의10제3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"육아휴직"은"을 ""집중육아"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"육아휴직"을 각각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각각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3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

전후육아"로 한다.

제90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106조제3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107조제1항제4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110조제1항제10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제112조제1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제116조제1항제3호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,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 한다.

⑩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7호의2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

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출산전후휴가"를 "필수전후육아"로, "육아휴직제"를 "집중육아제"로 한다.

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나목 중 "출산휴가제"를 "필수육아제"로, "육아휴직제"를 "집중육아제"로 한다.

③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 중 "육아휴직"을 "집중육아"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 "육아휴직제"를 "집중육아제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	제18조(필수전후육아 등에 대한
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	지원) ①
따른 배우자 <u>출산휴가</u> , 「근로	<u>필</u> 수육아
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<u>출산</u>	<u>필</u> 수전
<u>전후휴가</u> 또는 유산·사산 휴	<u>후육아</u>
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	
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	
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	
상당하는 금액(이하 " <u>출산전후</u>	<u>필</u> 수전후육
<u>휴가급여등</u> "이라 한다)을 지급	<u>아급여등</u> "
할 수 있다.	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<u>출산</u>	② <u>필수</u>
<u>전후휴가급여등</u> 은 그 금액의	<u>전후육아급여등</u>
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	
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제4항에	
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	
본다.	
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	③ 필수전후육아급여등
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	
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	
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	
담할 수 있다.	
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	④ <u>필</u> 수전후육아급여

<u>등</u> 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	<u> </u>
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	
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	
다.	
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	⑤ 필수전후육아급여등
요건,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	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	
률로 정한다.	<u>.</u>
제18조의2(배우자 <u>출산휴가</u>) ①	제18조의2(배우자 <u>필수육아</u>) ① -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	
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	
우자 <u>출산휴가</u> "라 한다)를 청	필수육아
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	
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	
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	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	②
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	필수전후육아급여등
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	
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	
③ 배우자 <u>출산휴가</u> 는 근로자	③ <u>필수육아</u>
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	
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	
④ 배우자 <u>출산휴가</u> 는 1회에	④ <u>필수육아</u>
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	

다.

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

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- 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<u>휴</u>직(이하 "육아휴직"이 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<u>육아휴직</u>의 기간은 1년 이 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로 <u>육아휴직을</u> 사용할 수 있다.
 -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

비로 케OOFO1 등 나뉜 크 0 쩐 드 키
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
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 제19조(집중육아) ①
~119年 <u>(母名丑~L)</u> ①
집중육아(이하 "집중육
아"라 한다)를
<u>.</u>
② 집중육아
<u>집중육아를</u>
1
집중육아를

2.	· 3.	(생	략)
┙.	Ο.	\ 0	1/

- ③ 사업주는 <u>육아휴직을</u>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<u>육아</u>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사업주는 <u>육아휴직을</u>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 또한 제2항의 <u>육아휴직</u>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-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.
- ⑥ <u>육아휴직</u>의 신청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저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③ <u>집중육아를</u>
집
<u> 중육아</u>
④ <u>집중육아를</u>
집중육아
<u> </u>
·
<u>집중육아</u>
· ⑥ 집중육아
<u> </u>
∥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
- ① (생략)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(생 략)
-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기간 이내로 한다.
- ⑤ ~ ⑦ (생 략)
- 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저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 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

① (현행과 같음)
2
つ ス ウ ム
<u>집중육아</u>
· ③ (현행과 같음)
4
집중육아를
집중육아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세19조의4(<u>집중육아와</u> 육아기 근
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-
<u>집중육아를</u>
→1 → ^
<u>집중육</u>

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 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략)

- 제19조의6(직장복귀를 위한 사업 주의 지원)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 전후휴가, 육아휴직 또는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 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 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하다.
- 제20조(일 ·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)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 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 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(생략)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

	아를	집중	육아
	르 <u>-</u>		
	② (현행과 같음)		
제	19조의6(직장복귀를 우	한	사업
	주의 지원)		
	<u>집중육아</u>		
			필수
	전후육아, 집중육아		
제	20조(일·가정의 양립	을	위한
	지원) ①		
	<u>집중육아나</u>		
	② (현행과 같음)		
제	37조(벌칙) ① (현행과	같음	-)
	②		

-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2의2.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3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<u>육</u>
 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,
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데도 <u>육아휴직</u>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
- 4. ~ 9. (생략)
- ③ (생 략)
-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제19조제1항·제4항을 위반 하여 근로자의 <u>육아휴직</u> 신청 을 받고 <u>육아휴직을</u> 허용하지 아니하거나, <u>육아휴직을</u>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
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
۷ ۹ 2
필수육아

-
3 <u>집</u>
중육아를
<u> </u>
집중육아

4. ~ 9. (현행과 같음)
. — - , — , .
③ (현행과 같음)
(4)
<u>,</u>
1 0 /처케크 기 (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-1 Z A .1
<u>집중육아</u>
집중육아를
<u>집중육아를</u>

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 우

5. · 6. (생략)
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생략)

-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의2. (생략)
- 4.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, 육 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
- 5. ~ 9. (생략)
- ④・⑤ (생 략)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·.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
<u>집</u>
중육아
5. ~ 9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현행과 같음)